

제원의 허용차(제115조관련)

제 원 종 별	길이 (mm)	너비 (mm)	높이 (mm)	윤간 거리 (mm)	축간 거리 (mm)	오우버행 (mm)	객실 및 하대 (mm)			차량중량(kg)
							길이	너비	높이	
경 형 및 소형자동차	±4 0	±3 0	±5 0	±3 0	±3 0	±30	±3 0	±3 0	±3 0	±60
중형자동차 및 대형자 동차	±5 0	±4 0	±6 0	±4 0	±3 0	±40	±5 0	±3 0	±3 0	±100 또는 ±3% 중 큰 허용차 적용

주

1. 제4조, 제6조, 제38조, 제38조의2부터 제38조의5까지, 제39조, 제40조, 제40조의2, 제41조부터 제44조까지, 제44조의2, 제45조, 제46조, 제49조, 제59조, 제60조 및 제75조부터 제8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는 자동차에 적용함에 있어서는 “+”의 허용차를 인정하지 아니한다. 다만, 별표 7의2 제11호의 순번 제3호에 따른 보조제동장치를 장착한 승합자동차의 구동축 축하중의 경우에는 3% 이하의 범위에서 “+”의 허용차를 인정한다.
2. 자동차 등화장치의 부착위치 허용차는 제원중 길이·너비 및 높이의 허용차를 준용한다.
3. 승용자동차와 이륜자동차의 제원 및 등화장치의 허용차는 경형 및 소형자동차의 허용차를 적용한다.
4. 초소형자동차의 경우에는 차량중량(kg) 허용치를 ±40을 적용한다.
5. 「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」 별표 1제1호에 따른 길이·너비·높이 및 총중량에 대해서는 이 표에 따른 허용차를 적용하지 않는다.